

1. 개정 이유

법률의 내항어선 출입신고 규정 삭제에 따라 본 시행령의 내항어선 출입신고 위임규정을 삭제함. 또한 선박의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선박대피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선박의 피항명령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여 체납자 감경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가중처분 규정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항어선 출입신고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단서조항 삭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시행(‘20.8.26.)됨에 따라 내항어선의 출입항신고(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등이 법제화됨. 이와 함께 기존에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위임을 받아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방법·절차 등을 규율하던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적용대상에서 내항어선이 제외됨. 따라서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내항어선 출입신고 의무규정은 그 절차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이 불가함.

그러나 「선박입출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 법 집행 상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선박입출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선박대피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의2 신설)

「선박입출항법」에 피항명령 및 선박대피협의회 법제 근거가 마련(‘23.1.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수임법령인 시행령에 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피항명령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피항명령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라. 과징금 체납 시 감경 금지규정 마련(별표1)

권익위 의결(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분 시 과징금 체납자는 감경이 불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4) 법제처 심사 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선박대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회”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단체(「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
4. 그 밖에 관리청이 선박 대피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선박대피협의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태풍, 풍랑, 해일(海溢),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선박대피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박대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선박대피 개시 시점
2. 선박대피 완료 시점
3. 항만운영 중단 시점
4. 항만운영 재개 시점
5.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제1항제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선박의 피항명령

별표1의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다만, 내항어선(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의 출입 신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선박대피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의 2제2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회의”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u> <u>1. 「해운법」에 따른 해운단체(「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u> <u>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u>

3.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

4. 그 밖에 관리청이 선박 대피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선박대피 협의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태풍, 풍랑, 해일(海溢),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선박대피협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박대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선박대피 개시 시점

2. 선박대피 완료 시점

3. 항만운영 중단 시점

4. 항만운영 재개 시점

5.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